

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66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. 4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에 따라 수도요금의 납부 고지 및 방법에 전자우편(이메일)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전자우편 고지 신청자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대상을 기존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청자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자에게도 요금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수도요금 납부고지를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전자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)
- 나. 수도요금의 납부방법에 있어서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전자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36조의2 신설)
- 다.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(이메일)으로 수령하는 경우 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함(안 제39조의2제1항)
- 라. 정수처분(급수의 정지) 실시 후 해제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보완함(안 제42조제2항)
- 마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(안 제1조 등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- 나. 관계법령: 지방자치법 제22조, 지방공기업법 제22조(붙임 참조)
- 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0. 3. 2. ~ 2020. 3. 23.(22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: 개선의견 없음

5) 갑질영향평가: 개선의견 없음

6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(미첨부사유서 붙임)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”을 “사용자, 소유자 및 관리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아니하고”를 “않고”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5호이상”을 “5호 이상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2항 중 “공지에”를 각각 “공터에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공용급수설비의 설치등)”을 “(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인정하는 경우에는”을 “인정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행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납부일로”를 “납부일”로, “경우는 공사계약후”를 “때에는 공사계약 후”로 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아니하다고”를 “않다고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시공자재검사수수료”를 “시공자재 검사수수료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준공후”를 “준공 후”로, “정산후”를 “정산 후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납부하게 할”을 “납부할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“아니하고는”을 “않고는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도사용자 등”을 “수도사용자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개시하거”를 “시작하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아니한 때에는”을 “하지 않은 경우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제1항의 단서 규정”을 “제1항 단서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공작물”을 “인공구조물의”로, “하여서는 아니된다”를 “해서는 안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태만히 함”을 “게을리함”으로, “수도사용자 등”을 “수도사용자등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인정하는 경우에는”을 “인정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 제목 “(급수 중지와 폐전)”을 “(급수중지와 폐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아니할”을 “않을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 본문 중 “사용료요율표”를 “사용료 요율표”로, “업종별사용요금”을 “업종별 사용요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공설공용급수설비에 대하여”를 “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해서”로,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단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단서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한다.

제29조제2항 본문 중 “달리하는”을 “다르게 하는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3항 중 “전후”를 “앞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온수용보조계량기”를 “온수용 보조계량기”로, “합산하여”를 “합하여”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중 “초과하는”을 “넘는”으로 한다.

제35조 전단 중 “때로”를 “날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초과하지 아니하는”을 “넘지 않은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전자우편(이메일)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.

제36조제2항 중 “하수도사용료등과 병과하여”를 “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부과하여”로 한다.

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)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제37조의2제2항 단서 중 “불특정다수인”을 “불특정 다수인”으로,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한다.

제38조의2제3항 중 “수질검사성적서”를 “수질검사 성적서”로 한다.

제39조의 제목 “(요금등의 감면)”을 “(요금 등의 감면)”으로 한다.

제3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.

1.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
2. 수도요금을 금융기관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한 수용가가 자동납부 청구통지서를 전자우편(이메일)으로 신청하는 경우

제40조제1항 중 “얻어”를 “받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초과하는”을 “넘는”으로 한다.

제42조의 제목 “(정수처분)”을 “(정수처분 및 정수처분의 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아니한”을 각각 “않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”을 “제1항의 수도요금, 징수금 등과 제38조

제4호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함께”로 한다.

제42조의2제1항 중 “5에 해당하는 금액을”을 “5를”로 한다.

제43조의 제목 “(수도계량기의 훼손, 망실등에 대한 책임)”을 “(수도계량기의 훼손, 망실 등에 대한 책임)”으로 한다.

제44조의 제목 “(과태료등)”을 “(과태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 중 “아니하고”를 “않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시계획사업등”을 “도시계획사업 등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날로”를 “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날로”를 “날”로, “이내”를 “이내에 이”로 한다.

제47조의2 중 “예에”를 “예를”로 한다.

제47조의3 단서 중 “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에”를 “대해서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를”로 한다.

제48조제2항제3호 중 “설치등”을 “설치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4호 중 “요금등”을 “요금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7. 제42조의 정수처분 및 정수처분의 해제

제49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6조제1항 및 3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한 수용가가 자동납부 청구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는 2020년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급수설비의 구분)

- 1. (생 략)
- 2. 공용급수설비: 5호이상 영세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
- 3. (생 략)

제6조(급수공사의 승인)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② 삭 제
- ③ (생 략)

제6조의2(세대별계량기의 설치)

- ① (생 략)
-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하며, 세대별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삭 제
- ④·⑤ (생 략)

제7조(공용급수설비의 설치등)

-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② (생 략)

제4조(급수설비의 구분)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- 5호 이상 -----
- 3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급수공사의 승인) ①-----
----- 받
아야 --.

- 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세대별계량기의 설치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

-----공터에-----

----- 공터에 -----
-----.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)

- ① ----- 인정할 때에는 -----.
- ② (현행과 같음)

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제12조(공사비의 산출방법)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, 시공비, 도로복구비, 설계수수료,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3조(공사비의 선납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

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,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정한다. 다만,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(생략)

⑤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정용 급수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19조(수도의 사용) ① 수도를

--- 않다고 -----

-----.

제12조(공사비의 산출방법) ① --

----- 시공자재 검사수
수수료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공사비의 선납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않은 -----

-----.

③ ----- 준공 후
----- 정산 후 -----

-----.

않는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납부할 -----.

제19조(수도의 사용) ① -----

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략)

제20조(신고)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

2. 3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21조(수돗물의 판매금지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3조(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

----- 않고는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신고) ① 수도사용자등-----

1. ----- 시작하거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하지
않은 경우 -----

제21조(수돗물의 판매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 단서-----

제23조(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

책임) ① (생략)

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,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,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.

제25조(급수정지 및 사용제한) ①

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26조(급수 중지와 폐전) ①

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(개별계량을 하는

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인공구조물의-----

-----해서는 안 된다.

③ -----
-----게을리함-----
-----수도사용자등-----
-----.

제25조(급수정지 및 사용제한) ①

-----인정할 때에는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급수중지와 폐전) ① 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않은-----

공동주택의 경우 “호”)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설비를 폐전할 수도 있다.

- 1. (생략)
- 2.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
- 3. 삭제
- 4. ~ 8. (생략)

제28조(수도사용요금) ① 요금은 별표2의 사용료요일표에 의하며,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. 다만, 공설공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안 니한다.

②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해당 구역의 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 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제29조(업종의 구분) ① (생략)

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

-----.

③ -----

-----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-
----- 않을 -----

4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수도사용요금) ① -----
----- 사용료 요일표-----
----- 업종별 사용
요금-----.

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해서-----

않는다.

② ----- 단서에 따른 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않는다.

제29조(업종의 구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다르게 하는 -----

이 제28조에 의한 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지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을 징수한다.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산정하고, 다음번 요금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6조(납부고지) ①요금은 납부 고지서에 의한다. <단서 신설>

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 사용료등과 병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<신설>

제37조의2(운반급수와 ① (생략)

----- 날 -----

----- . -----
----- 넘지
않은 -----

----- .

제36조(납부고지) ① -----
----- . 다만, 수도사용
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전자우편
(이메일)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
있다.

② ----- 하수
도사용료 등과 함께 부과하여 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6조의2(신용카드 등을 이용한
납부방법) 수도사용자등은 수도
요금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
대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전
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
수 있다.

제37조의2(운반급수와 ① (현행과

② (생략)

제40조(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)

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,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·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2.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, pH, 색도, 수돗물에 함유된 철, 납, 구리,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
④ (생략)

제42조(정수처분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.

1. 사용요금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0조(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)

① -----
----- 받아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넘는 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2조(정수처분 및 정수처분의 해제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않은 -----

2. 수수료, 공사비,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

3. ~ 11. (생략)

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.

③ (생략)

제42조의2(포상금 지급) 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43조(수도계량기의 훼손, 망실 등에 대한 책임) (생략)

제44조(과태료등)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

2. -----

----- 않은 -----

3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제1항의 수도요금, 징수금 등과 제38조제4호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함께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2조의2(포상금 지급) ① -----

----- 5를 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43조(수도계량기의 훼손, 망실 등에 대한 책임) (현행과 같음)

제44조(과태료 등) ① -----

----- 대해서 -----

-----.

이를 경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45조(급수설비의 철거)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.

②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제26조제3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47조(이의신청)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제47조의2(지방세 징수의 준용) 이 조례에 의한 요금, 연체가산금, 수수료,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5조(급수설비의 철거) ① -----
----- 않고 -----

-----.

② 도시계획사업 등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7조(이의신청) ① -----

----- 날-----
-----.

② ----- 날-----
----- 이내에 이-----
-----.

제47조의2(지방세 징수의 준용) -

----- 예를 -----
-----.

제47조의3(소멸시효)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「민법」 제163조를 따른다. 다만, 요금 이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에 따른다.

제48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략)

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제1호부터 제30호까지는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고, 제32호는 수질연구소장 및 정수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. 다만, 제5호·제7호·제9호·제11호·제17호 및 제23호의 권한은 시설관리소장에게도 재위임한다.

1.·2. (생략)

3. 제7조의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

4. ~ 23. (생략)

24. 제39조의 요금등의 감면

25.·26. (생략)

27. 제42조의 정수처분

28. ~ 32. (생략)

제4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7조의3(소멸시효) -----

-----.

----- 대해서는 「지방재정법」

제82조를 -----.

제48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설치 등

4. ~ 23. (현행과 같음)

24. ----- 요금 등-----

25.·26. (현행과 같음)

27. 제42조의 정수처분 및 정수처분의 해제

28. ~ 32. (현행과 같음)

제49조(시행규칙) -----

----- 필요-----

-----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지방공기업법

제22조(요금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□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

제36조(납부고지)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39조의2(수도요금의 할인) ①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 용가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2조(정수처분)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.

1. 사용요금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
2. 수수료, 공사비,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
3. 급수를 도용한 자
4.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
5.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
6. 삭제
7.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
8.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
9. 10. 삭제
11.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

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료를 징수한다.

③ (생략)

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에 따른 연간비용은 21백만원 정도로 관련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.

※ 산출내역

- 수도요금 전자우편 고지 비용: 건당 할인액 200원, 연간 72천건, 14.4백만원
- 신용카드 수수료: 건당 80원, 연간 72천건, 연간 5.7백만원
- 전용망 이용료: 월 90천원, 연간 1백만원

4. 작성자 :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감사과장 배영민